

기술표준원고시 제2008-0902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이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8년 12월 11일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[별표1]을 필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인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고시의 K60968, K60969, K60064, K60155, K60432-1, K60838-1, K61050, K61184, K61347-2-8의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, K62031, K661347-2-13, K62384, K60838-2-2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【붙임 : 제·개정 주요내용】

1. 제·개정취지

'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,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2031(일반조명용 LED모듈-안전요구사항) 등 4종을 제정하고, K60598-1(등기구 - 제1부 일반요구사항) 등 15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며, 국내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적용시기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1) 강제 적용 안전기준에 K62031(일반조명용-LED모듈-안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추가
- 2) 강제 적용 안전기준에 K61347-2-13(램프구동장치 - 제2-13부 - LED모듈용 DC/AC전원 전자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)를 제정하여 추가

- 3)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2384(LED모듈용 DC/AC전원 구동장치 - 성능요구사항)를 제정하여 추가
- 4)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838-2-2(기타램프 홀더 - 제2-2부 - 개별요구사항 - LED모듈용 커넥터)을 제정하여 추가
- 5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598-1(등기구 - 제1부 -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)의 01 범위에 “교류전압으로 동작하는 LED등기구”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등 국제기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
- 6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968(안정기내장형램프 - 안전)의 표시사항에 정격광속 및 광속 유지율을 표시에 추가하고, 5.교환성에 E27 형의 캡을 삭제하고 E26 캡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적용범위에 E17, E39 캡을 사용한 제품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등 국제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
- 7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969(안정기내장형램프 - 성능)의 적용범위에 “정격 전력 60W까지”를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넓히 LED용 램프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개정
- 8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064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조명용의 텡스텐 필라멘트 전구 - 성능요구사항)의 적용범위에서 “정격소비전력 25W - 200W 이하”에서 “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”로, “정격전압 100V 이상 250V이하”에서 “정격전압 50V이상 250V이하”로, “캡 B22d, E26 또는 E27”에서 “캡 B22d, E12, E14, E17, E26 또는 E39”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
- 9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155(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)의 부속서C, D, E에 국제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
- 10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132-1(백열전구 - 안전 - 제1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닝기기용 텡스텐 필라멘트 전구)의 범위에서 “정격소비전력 200W까지”에서 “정격소비전력 1000W이하”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
- 11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838-1(기타램프소켓 -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 시험)의 2.11과도전압 범주의 내용 및 14.연번거리 및 공간거리에 정현파 교류전압 최소거리 내용의 국제기준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
- 12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838-2-1(기타램프소켓 - 제2-1부 - 램프소켓 S14에 대한 개별요구사항)의 오·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



- 13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927(시동장치 - 성능요구사항(글로우스타터 제외))의 오·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
- 14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47(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또는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 - 성능요구사항)의 오·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
- 15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50(무부하 출력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관형 방전램프용 변압기(네온변압기))의 1.1범위에서 열은극관형 형광램프를 비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
- 16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184(꽃음형 램프 소켓)의 2.재료 부분에 정격펄스전압, 내전압 카테고리, 2차측 회로 등을 추가하고, 충격시험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
- 17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347-2-1(램프 구동장치 - 제2-1부, 시동장치(글로우스타터 제외)에 대한 개별요구사항)의 오·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
- 18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347-2-2(램프 구동장치 - 제2-2부,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 입력 전자식 강압 컨버터의 개별 요구사항)의 오·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
- 19)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347-2-8(램프 구동장치 - 제2-8부,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)의 1.3안정기가열항목에서 부속서 J항 국제기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

붙임 : K62031, K61347-2-13, K62384, K60838-2-2, K60598-1, K60968, K60969, K60064, K60155, K60432-1, K60838-1, K60838-2-1, K60927, K61047, K61050, K61184, K61347-2-1, K61347-2-2, K61347-2-8 등 19종 안전기준

※ 상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기술표준 2009.1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985호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8년 12월 23일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[별표1] 및 제4조 참고적용 안전기준 [별표2]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인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고시의 K60228(전선 및 전원코드 : 절연케이블), K60245-1 (전선 및 전원코드 제1부 : 일반요구사항), K60245-4(전선 및 전원코드 제4부 : 코드 및 개요케이블), K60245-6(전선 및 전원코드 제6부 : 아크 용접용 케이블), K60245-8(전선 및 전원코드 제8부 : 고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), K60730-2-9(가정용 빛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온도감지 제어장치), K61558-2-13(범용 복권 변압기)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, K61558-2-1(범용 복권 변압기), K61558-2-2(제어용 변압기) 및 K61558-2-6(범용 절연 변압기)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【붙임 : 제·개정 주요내용】

1. 개정 취지

'09년부터 자율안전 확인제도 시행, 신기술 적용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되었기에 안전관리체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228(전선 및 전원코드 : 절연케이블) 등 전선류 9종과 K60730-2-7(가정용 빛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) 등 스위치 및 변압기류 9종의 안전기준을 제·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1) 강제적용 기준에 K60228(전선 및 전원코드 : 절연케이블)을 개정하여 추가

- 국제규격(IEC60228 ed.3.0(2004))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
- 알루미늄 도체 인장강도 요구 조건 추가 등
- 2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1(전선 및 전원코드 제1부 : 일반 요구사항)을 개정하여 추가
국제규격(IEC60245-1 ed.4.1(2008))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
- 천연고무 재질(IE1)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(IE4)로 대체 등
- 3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2(전선 및 전원코드 제2부 : 시험방법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- 4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4(전선 및 전원코드 제4부 : 코드 및 가요케이블)을 개정하여 추가
국제규격(IEC60228 ed.3.0(2004))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
- 천연고무 재질(IE1)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(IE4)로 대체 등
- 5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5(전선 및 전원코드 제5부 : 리프트 케이블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- 6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6(전선 및 전원코드 제6부 : 아크 용접용 케이블)을 개정하여 추가
국제규격(IEC60228 ed.3.0(2004))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
- 천연고무 재질(IE1)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(IE4)로 대체 등
- 7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7(전선 및 전원코드 제7부 : 내연성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- 8) 강제 적용 기준에 K60245-8(전선 및 전원코드 제8부 : 고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)을 개정하여 추가
국제규격(IEC60228 ed.3.0(2004))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
- 천연고무 재질(IE1)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(IE4)로 대체 등
- 9) 강제 적용 기준에 K60502-1(전선 및 전원코드 제1부 :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- 10) 강제 적용 안전기준에 K60730-2-7(기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세이 장치 - 나미비 및 나임스 위치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- 11) 강제 적용 안전기준에 K61558-2-1(전력용 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기준 - 범

용 복권 변압기)을 제정하여 추가
범용 복권 변압기의 개별 안전기준을 제정
- 교류 1000V이하, 500Hz이하의 거치형 또는 휴대용, 단상 또는 다상의 공랭식 변압기

12)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558-2-2(전력용 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기준 - 제어용 변압기)을 제정하여 추가
제어용 변압기의 개별 안전기준을 제정
- 고정 또는 휴대용, 단상 또는 다상의 교류 1000V이하, 리플(ripple)이 없는 직류 1,415V 공급 전원의 공랭식 제어 변압기

13)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558-2-6(전력용 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기준 - 범용 절연 변압기)을 제정하여 추가
범용 복권 변압기의 개별 안전기준을 제정
- 교류 1000V이하, 500Hz이하의 거치형 또는 휴대용, 단상 또는 다상의 공랭식 범용 절연 변압기

14)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0730-2-6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자동압력 스위치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
15)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0730-2-9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온도감지 제어 장치)을 개정하여 추가
국제규격(IEC)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의 부합화
- 온도 요구값 요구조건 추가

16)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0730-2-10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모터기동 릴레이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
17)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0730-2-11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- 에너지 조절기)을 개정하여 추가
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
18)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61558-2-13(전력용 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기준 - 범용 복권 변압기)을 개정하여 추가
범용 단권 변압기의 개별 안전기준을 개정
- 교류 1000V이하, 500Hz이하의 거치형 또는 휴대용, 단상 또는 다상의 공랭식 변압기

※ 상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기술표준 2008.12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-0436호

제품안전기술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

제정 2008년 12월 29일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제품안전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관련규정
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.

3. 사업의 범위

이 사업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가. 제품의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안전취약 제품(부품포함)을 개량·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
- 나. 제품안전 사고원인 분석·평가를 위한 고장진단·가속수명시험 등 안전성 평가기술 및 국제수준의 안전기준 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

4. 용어의 정의

- 가. “제품”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부분품을 말한다.
- 나. “제품안전”이라 함은 소비자(이린이 포함)가 제품을 취급 또는 사용시 발생하는 신체상 위험·위해 및 재산상 피해 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다. “제품안전기술”이라 함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성 향상기술 및 고장진단·가속수명시험, 안전기준 개발 등 안전성 평가 관련기술을 말한다.
- 라. “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”이라 함은 제품안전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주체가 제품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,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의 제조·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마. “기술개발주체”라 함은 제품안전기술을 연구·개발하는 기업·대학 및 시험·인증·연구

기관 등을 말한다.

- 바. "연구성과물"이라 함은 제품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되는 제품(시제품을 포함한 다)·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,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.
- 사. "사업화"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취약 제품(부품포함)의 안전품질 향상 및 안전병목화를 위해 개량·개선하고 제조·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아. "주관기관"이라 함은 사업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자. "총괄책임자"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.

5. 운영체계

가. 조정위원회

- 1) 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·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2) 조정위원회는 기술표준원 담당관을 당연직으로,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, 구체적 사항은 기술표준원 소관과에서 정한다.

나. 전담기관

- 1)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가) 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
 - 나)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건과의 종합 분석
 - 다) 사업계획서의 검토,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
 - 라) 사업 수행실태의 점검,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
 - 마) 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
 - 바) 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
 - 사)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아) 제 4호 내지 제 5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
 - 자)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2) 전담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이 사업의 전담기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 한다.

다. 평가위원회

- 1) 기술표준원장은 사업의 효율적 기획·평가·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 - 가) 지원대상 개발과제의 도출
 - 나) 사업에 대한 신규, 진도, 단계, 최종 및 성과활용 평가
 - 다)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4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제재·

환수 심의

리) 기타 사업의 기획(평가)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항

- 2) 평가위원회는 산·학·연 기술, 경제 및 제품안전 전문가로 구성·운영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라. 주관기관

- 1) 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·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- 가) 사업의 협약제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
 - 나)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, 시설 및 행정지원
 - 다)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
 - 라) 기술개발사업 진도, 단계, 최종보고서의 제출
 - 마)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
 - 바) 기술료의 징수·사용·관리 및 결과의 보고, 전담기관에 기술료 납부
 - 사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자료 제출
 - 아) 수행과제의 보안관리
 - 자) 연구윤리 준수
- 3)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의 자격과 권한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마. 참여기관

- 1) 당해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- 가) 기술개발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
 - 나) 정부출연금 이외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
 - 다) 개발건과의 활용
- 2) 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(이하 "실시기업"이라 한다)의 대표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·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3)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불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)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의 자격을 가지며, 이 경우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바. 위탁기관

주관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.

사. 총괄책임자

- 1) 당해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(이하 "총괄책임자"라 한다)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2)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- 가) 사업계획서의 작성
 - 나)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
 - 다)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 - 리) 기술개발사업의 진도, 단계,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기술개발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
 - 마)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
 - 바)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배분
- 3)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, 이직, 퇴직, 부서 이동,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6. 사업의시행

가. 시행계획의 공고

- 1)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내용, 지원범위, 신청기한, 세부과제, 신청자격, 사업비 등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2) 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전담기관의 검토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나. 사업의 신청 및 심의

- 1)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계획서(이하 "사업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2)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3)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7. 사업비

가. 사업비 계상

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0조(기술개발사업비 계상) 규정을 준용한다.

나. 정부출연금 지원 및 사업비 분담

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1조(출연금의 지원 정도), 제22조(민간부담금) 규정을 준용한다.



8.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

- 1) 기술표준원장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3조(협약의 체결)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의 장과 사업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위탁기술개발사업은 주관 기관의 장과 위탁 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.
- 2) 협약변경, 해약, 출연금 지급,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9. 사업의 결과보고 및 평가

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8조(기술개발사업결과의 보고), 제29조(기술개발사업결과의 평가), 제30조(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) 규정을 준용한다.

10. 사업의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

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1조(기술개발사업 결과 활용), 제32조(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보고), 제33조(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), 제34조(세제 및 정부출연금 환수 관리), 제35조(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) 규정을 준용한다.

11. 사업의 보안관리

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(지경부고시 제2008-23호, 2008.4.15)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-0435호

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계획 공고

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코사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(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),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·운영요령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606호)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12월 29일

기술표준원장

1.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대상

- ①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·협회·조합 또는 연구기관
- ②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.)
- ③ 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

2.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요건

- ①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
- ③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을 것

3. 신청분야 또는 품목

- ① 표준의 부문기호(대분류) 및 중분류
- ②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소관분야
■ 08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분야(37개) 제외

4. 신청기간: 2008년 12월 29일~2009년 1월 16일

5. 신청서양식 및 구비 서류
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지정 신청서
- 구비서류
 -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 -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·인력 현황

-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

※ 자세한 사항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·운영요령 참조

6. 신청서 접수처 :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

7. 기타사항

상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

- 주소 : 우427-0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
- 전화번호 : (02) 509-7260, FAX : 507-1924

| 기술표준 2009.1